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축수산물 등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
■ 최승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70호)

2021.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승재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1. 9. 8.
- (3) 회 부 일 : 2021.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 청렴을 위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 특히 '20.1월 이후 1년반 이상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며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텼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을 총력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 19로 누적된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III.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¹⁾,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²⁾³⁾.

○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이 생산·가공·판매하는 20만 원 이하의 선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u>
8. (생략) ④·⑤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특정 업종의 상품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법안 심사 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선물의 대상과 가액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제3항제2호5)의 특별 규정 성격이어서 같은 조 같은 항에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가액 범위의 조정 대상인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은 이미 그 범위가 10만원으로 다른 품목의 가액 범위(5만원)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음.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문 의 처
02)6788-5114